

##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10

제출년월일 : 1997년. 4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현재까지 민간의뢰의 비료, 농약등에 관한시험을 농촌진흥청 시험·분석위탁규칙에 의해 수행하여 왔으나 1997년 이후부터 지방직화됨에 따라 도농촌진흥원에서도 농업에 관련된 시험 및 분석·검정에 관한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함.

### 주요골자

- ①시험·분석 및 검정에 관한 용어정의와 시험의뢰 절차, 시험기간을 정함(안 제 1, 2, 3, 4조)
- ②시험등에 대한 업무절차와 시험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 기구가 진흥원에 없을 경우 의뢰인에게 기계, 기구를 제공할 수 있게 함(안 제5,6조)
- ③시험등의 의뢰를 거절할 수 있는 규정과 임의로 거절할수없도록 함(안 제7조)
- ④시험등을 마친후 결과 통지 및 성적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규정 (안 제8,9조)
- ⑤시험분석 및 검정의뢰자가 결과 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에 대한 결과 표시등의 제한 (안 제10조)
- ⑥시험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시험의 의뢰에 대한 경비 납부명시 (안 제11조)
- 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등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안 제12조)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 별첨

##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 및 검정(이하“시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라 함은 농업기술, 작물, 원예, 축산 등과 관련된 물질 또는 물품의 성질, 능력, 변화 및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라 함은 그 물질 또는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검정”이라 함은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 성능 및 안전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사·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시험등을 하고자하는 대상물품을 충청북도농촌진흥원의 장(이하“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자가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부터 20일 이내
  2. 분석 및 검정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신청서를 제출할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의 의뢰자는 자체시험성적서(국내외의 예비시험성적을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신청기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 및 검정의 의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시험의 의뢰는 시험목적, 처리기간 및 작물재배시기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여름작물은 11월 1일~12월 15일, 겨울 작물은 6월 1일~7월 15일
2. 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은 제1호의 시기 및 2월 1일~2월 말일과 8월 1일~8월 31일

제5조(시험 등의 업무처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의 의뢰신청을 받은 진흥원장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①진흥원장은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기계·기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기구를 제공받은 진흥원장은 시험등이 끝난 즉시 기계·기구를 의뢰자에게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의뢰자로부터 제공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 등의 거절) ①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진흥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절할 수 있다.

1. 시험 등에 인력 및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대상물품의 시험목적 및 성격상 대상작물 재배시기가 부적합할 때
3. 진흥원이 보유하고있는 시설과 장비 또는 의뢰자가 제공한 기계·기구등으로써 시험 등을 할 수 없을 때
4. 시험 의뢰자가 제11조 제1항에 수수료 및 제2항에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규정된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진흥원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시험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과 함께 대상물품을 찾아가도록 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통지) 진흥원장은 시험등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 후 10일 이내에,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분석 및 검정이 끝난 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성적증명서 발급) ①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당해 시험등을 의뢰한 자에게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의 성적증명서를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험 등의 결과표시) ①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뢰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시험등의 결과표시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등의 허위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수수료 및 시험등 경비) ①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의 시험의뢰 수수료는 충청북

도 수입증지로, 분석 및 검정의뢰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별표 3]의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따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